

#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 · 관리조례개정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2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12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년 12월 14일)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수과장 우의제)

### □ 제안이유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04. 3. 11, 법률 제7188호)과 동법시행령( 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7호)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 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재난관리기금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안 제2조)
- 기금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30퍼센트이상은 장기예치금액으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당해연도에 사용가능하도록 예치하여 운용 관리하도록 함. (안 제3조 내지 제5조)
- 기금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함. (안 제6조)

-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재난업무 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함. (안 제9조)
-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함. (안 제12조)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성계획, 기금의 사용계획 및 기금의 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함. (안 제13조)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재난·재해 통합관리 기금조성액은 얼마인지 ?		○ 87억 정도이며 통합하여 하수과에서 일괄 관리 토록하는 것임.	
○ 사용처는 ?		○ 복구사업, 예방사업에 쓰여지는 기금이 될것임.	
○ 기금사용 방법에 대하여 ?		○ 기금운영을 위하여 목적, 용도는 심의 위원회의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한도액은 없을것임.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융자지원도 가능하고 시민들은 이러한 기금에 대하여 알지못할 것인데 ?		○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음.	
○ 연구용역도 가능한가 ?		○ 가능함.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 의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3호
의결 년월일	2004.12.23 (제116회)

제출년월일 : 2004. 12 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04. 3. 11, 법률 제7188호)과 동법시행령( 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7호)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 임.

### □ 주요골자

- 재난관리기금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안 제2조)
- 기금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30 퍼센트이상은 장기예치금액으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당해연도에 사용가능하도록 예치하여 운용 관리하도록 함. (안 제3조 내지 제5조)
- 기금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함. (안 제6조)

-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재난업무 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함. (안 제9조)
-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함. (안 제12조)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성계획, 기금의 사용계획 및 기금의 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함. (안 제13조)

## □ 첨부

-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정립

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  
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  
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부천시  
의 지정 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  
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  
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지원 용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천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부천시의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중 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
2. 영20조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중 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4. 재난발생에 대비한 물자, 자재, 장비의 지정·비축 및 정비
5.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

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6.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일부에 대한 용자. 단, 부천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0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상품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의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한다.

④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천시소속 공무원, 시의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재난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기금출납원은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